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2010년 12월 22일

신한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환매수수료 오류 정정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 환매수수료 오류 정정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1. 매입 및 환매 기준</p> <p>나. 환매</p> <p>(1) 생략</p> <p>(2) 생략</p> <p>(3) 환매수수료:</p> <p>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p> <p>1. 종류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1. 매입 및 환매 기준</p> <p>나. 환매</p> <p>(1) 생략</p> <p>(2) 생략</p> <p>(3) 환매수수료:</p> <p>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p> <p>1. 종류 C 수익증권 : 없음</p> |
| 1. 환매수수료 오류 정정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1) 생략</p> <p>(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 종류 C: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1) 생략</p> <p>(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 종류 C: 없음</p> |

간이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환매수수료 오류 정정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 환매수수료 오류 정정 | <p>제3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p> <p>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종류 C: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 <p>제3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p> <p>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종류 C: 없음</p> |